

인천-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(3차) 변경 실시 협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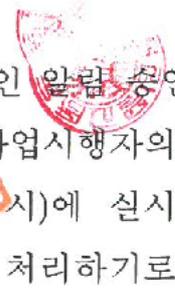
2016. 9. 21.

국 토 교 통 부
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

(3차)변경 실시협약

국토교통부(이하 “주무관청” 이라 한다.)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(이하, “사업시행자” 라 한다.)는,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이하, “본 사업” 이라 한다.)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{이하 “실시협약” 이라 하며, 2011년 4월 7일 (1차)변경실시협약 및 2014년 11월 19일 (2차)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.}을 체결하였던 바,

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변경 등 및 자금재조달계획서 승인 요청(인천김포 2014-1029호 2014.12. 18.)에 대한 절차 진행 중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등을 변경할 필요와 관련하여,

위 절차 중 주무관청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  알람 승인[2015. 12. 3. 광역도시도로과-3029]조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위 요청으로 인한 자금재조달에 대해서는 준공시점(통행료 산정시)에 실시협약,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등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여,

당사자들은 2016년 9월 21일 다음과 같이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(3차)변경실시협약 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정의)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(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15조(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)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<u>26.5%</u>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.	①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<u>21.5%</u>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.
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 투자비의 <u>26.5%</u>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 투자비의 <u>21.5%</u>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부록의 변경)

실시협약의 별표 1[출자자 및 지분율], 별표 3[약정투자금 투입일정], 별표 7 [운영비용], 별표 11[재무모델] 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 1[출자자 및 지분율], 별표 3[약정투자금 투입일정], 별표 7[운영비용], 별표 11[재무모델] 으로 각각 변경된다. 실시협약상 해당 별표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(실시협약의 효력 변경)

실시협약의 규정은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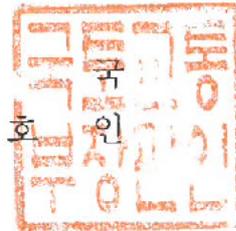
제 5 조 (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)

변경실시협약은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9월 21일

대한민국
국토교통부장관 강희인



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
대표이사 변종현

